연구2동 환경개선사업

- 일반 시방서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21. 05.

한국기계연구원

1. 용어정리

1.1 발주처

『발주처』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기계연구원』을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1.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자로서 한국기계연구원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1.4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1.5 수집·운반

『수집·운반』은 건설폐기물을 수집(보관장소)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1.6 중간처리

『폐기물처리』는 폐기물의 분리, 선별, 파쇄 및 소각 등에 의한 중간처리를 말한다.

2.일반사항

2.1 본 시방지침서는 주차장 및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한국기계연구원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2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390일**

- 수급인은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2.3 용역감독

감독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3.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2.3.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2.3.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4 수급인의 책임한계

2.4.1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4.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2.4.3 수급인이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5 안전 및 환경관리의 의무

2.5.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 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5.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환경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보존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5.3 수급인은 과업 수행으로 인한 비산·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주기적인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5.4 공사 장비 및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하

여 차량운행속도제한 및 장비조합, 사용장비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5.6 수급인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 피해 및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6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7 수급인은 본 공사의 수행에 적합한 자격 및 경력을 소지한 환경관리자를 폐기물처리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폐기물처리 공사 현장의 적법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환경관리자가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대체 관리자를 지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8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신고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 하여야하며,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10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11 본 시방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한국기계연구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2.12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13 본 과업 수행 중 책임기술자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2.14 건설폐기물 운반시 지정 차량으로 운반을 하여야하며, 작업 시간은

09:00~18:00까지로 제한하여야 하고, 폐기물운반 차량통행등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5 보안사항

2.15.1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해양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공사 보안업무 취급준칙을 준수한다.

2.15.2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16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17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18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 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9 보고 및 기록

2.19.1 수급인은 본 공사에 관하여 타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19.2 수급인은 폐기물운반 및 처리시에 일일 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대장에 준하여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별도관리하여야 하며, 일별, 월별, 연별(여러 해에 거쳐 수행되는 경우)로 보고하여야 한다.

2.19.3 폐기물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별도의 기록촬영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특기사항

3.1 폐기물처리는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성상별로 분리 처리하여야 한다.

3.2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3 폐기물은 상기 법에 따라 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3.4 폐기물 수량은 지장물 철거공사 물량, 기존 도면 및 실측등을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방법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거리증가에 따른 운반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3.5 건설폐기물 수량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수량 증감시는 별도의 지시에 의하며, 본 용역의 계약 업체는 폐기물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3.6 건설폐기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3.7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8 폐기물은 현장 내에 최초 보관 후 법정 보관기한을 초과하지 않고 처리하여야 한다.

3.9 수급인은 시공사가 선별보관한 기준에 따라 운반토록하며, 시공사 및 감독관의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3.10 용역 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 완료 기준일은 폐기물 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여,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 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3.11 폐기물 인계·인수

3.11.1 수급인은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11.2 수급인은 지장물철거 등에 따라 보관된 폐기물의 인수시 시공자와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11.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12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은 주기(1회/1일)적으로 현장 순회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내용(일자, 시간,특이사항 등)을 다음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3 지장물 철거공사 수급업체와 폐기물 처리 수급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분리·보관·관리 및 상차	폐기물 처리용역 수급업체
건설폐기물의 상차 후 처리장소로 운반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 소각하는 영업	중간처리업

⇒계약 후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선별 및 반출하여야하며 반출 지연
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14 감독관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반출중단 요구시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3.15 위험개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보관

4.1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을 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 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한다.
-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 등에 보관하는 방법 등) 보관가능.

4.2 보관장소(처리업소 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4.3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4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4.5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659호 2019.8.19)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방법)

5. 기타

5.1 계약자는 운반비가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계약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5.2 용역비의 조정(설계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5.2.1 발주처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 수량증감이 있을 때

5.2.2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때

5.2.3 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시

5.2.4 기타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5.2.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3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이나, 추가 폐기물 발생등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계약변경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은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5.5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근은 현장 계근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근장소 변경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6 시방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시행하여야 하여야 하며,「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에 의한다

5.7 영업정지, 허가취소(휴폐업 포함) 및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즉시 발주처에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미 수탁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5.8 4.2항의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폐기물에 대하여 수탁하여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상기사유로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될 때에는 계약해지 할 수 있다.

5.9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처” 와 “수급인”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5.10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법에 위배시는 관련법을 우선한다